

「전주양현초등학교 학교규칙」 개정안 신규대조표

기 존	변 경 안
제4장 교육과정·평가·수료·졸업 제10조(수업일수)	제4장 교육과정·평가·수료·졸업 제10조(수업일수) ④ 기타 출결 관련 운영 방침은 본교 출결 규정에 의한다.(추가)
<p>제11조(수업 등)</p> <p>⑥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일정한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p>⑦ 제6항의 교외체험학습에 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.</p>	<p>제11조(수업 등)</p> <p>⑥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,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.(변경)</p> <p>⑦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에,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.(추가)</p> <p>⑧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,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.(추가)</p> <p>⑨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 견학, 답사,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, 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·경계’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용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.(추가)</p> <p>⑩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, 필요시 반일(4시간)도 사용할 수 있다.(추가)</p> <p>⑪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.(추가)</p>
제9장 규정의 개정 제28조(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) ② 심의위원회는 전주양현초등학교 학생	제9장 규정의 개정 제28조(규정개정심의위원회 설치)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

<p>활교육·복지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는 교원위원, 학부모위원, 학생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원위원 중에 양현초 교감으로 한다. 학생위원은 전체위원의 4/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.(추가)</p> <p>③ 심의위원회는 전주양현초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(변경)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0장 교권 보호</p> <p>제32조(교권보호위원회 설치) ①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15조제7항에 따라 전주양현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.(추가)</p> <p>② 전주양현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전주양현초 인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(추가)</p> <p>③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 (추가)</p>